##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956 발의연월일: 2022. 12. 15.

발 의 자: 박영순·김용민·송갑석

양경숙・윤영덕・윤재갑

이용빈 · 임호선 · 장철민

전용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요

현행 「제품안전기본법」 내 제품안전관리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기용품, 생활용품,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·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 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 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4제2항). 법률 제 호

##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제2항 중 "사업수행"을 "운영 및 사업수행"으로, "지원"을 "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4(운영 재원) ① (생 략)	제21조의4(운영 재원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	②
원의 <u>사업수행</u> 에 필요한 예산을	<u>운영 및 사업수행</u>
<u>지원</u> 할 수 있다.	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